

일반공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1976호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1. 6. ~ 2025. 11. 20.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793)

다. 공람사유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관
리계획 수립(안) 주민의견 청취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
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30,111.1㎡	전체 : 80동 노후·불량 : 54동 (67.5%)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건축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2. 정릉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안)

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정

○ 관리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	증) 30,111.1	30,111.1	-

○ 관리지역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 면적: 30,111.1㎡	•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0,111.1	100.0	-
시행 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계	24,444.7	81.2	-
		A1 사업추진구역 A1 (가로주택정비사업)	17,985.6	59.7	-
		A2 사업추진구역 A2 (가로주택정비사업)	6,459.1	21.5	-
	정비기반 시설	소계	3,801.4	12.6	-
		도로	3,801.4	12.6	-
	소계		1,865.0	6.2	도로정비
시행 구역 외	정비기반 시설	도로	1,865.0	6.2	도로정비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18	15~18	집산도로	980 (43)	정릉동 966-8	정릉동 227-217	일반도로	서고 23 1974. 03.02	-
변경	중로	2	418	15~20	집산도로	980 (43)	정릉동 966-8	정릉동 227-217	일반도로	-	도로 확폭
신설	소로	1	1	10~12	국지도로	80	정릉동 410-7	정릉동 22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194	정릉동 266-543	정릉동 227-25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5	정릉동 227-154	정릉동 227-8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17	6~8	국지도로	234	정릉동 227-102	정릉동 192-138	일반도로	성고 97 2022. 05.19	-
변경	소로	1	4	8~12	국지도로	225	정릉동 227-102	정릉동 192-138	일반도로	-	도로확폭및 연장변경 (6m→8m) (8m→12m)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59	정릉동 222-1	정릉동 226-2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2	8~12	국지도로	124	정릉동 970-1	정릉동 410-7	일반도로	-	-

라. 교통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집산도로인 서경로변 차량 진출입 불허	-
차량 진출입구간	• 대상지 내 서경로9길,보국문로8나길을 통해 차량 진출입 설치	-
공공보행통로(6m)	• 기존 도로와의 연결 등 도시구조적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로 조성 (A-1)	-

마. 건축협정에 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위치	면적(m ²)	통합적용	완화적용
A1	사업추진구역 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정릉동 226-1 일대	17,985.6	- 대지의 조경(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 대지안의 조경(4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A2	사업추진구역 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정릉동 223-1 일대	6,459.1	

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내용	비고
시행 구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용도

구분	내용	비고
사업추진구역 A1 사업추진구역 A2	유형	· 공동주택 용지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사업구역	· 보국문로8길, 보국문로8나길, 보국문로8다길 건축한계선 3.0m 적용 ·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한계선 2m 적용 ·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내 전면공지 조성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전면공지 설정	

구분	적용지역	내용	비고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사업구역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 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 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	

■ 가이드라인(안)

구분	내용
열린단지	열린 공간계획
	보행가로를 고려한 공간계획
	단차극복 및 보행약자를 고려한 E/L(엘리베이터) 설치
	근린생활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단지	외부공간 및 조경
	통경축, 바람길 등을 위한 배치
	단지경관
평면 및 주동의 계획	평면계획
	주동형태 및 입면계획
	임대주택 계획
	특별건축구역계획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세대)	임대주택(세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합계			782	61	-	-
A1	사업추진구역 A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정릉동 226-1 일대	577	61	-	-
A2	사업추진구역 A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정릉동 223-1 일대	205	-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자.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용도지역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111.1	-	30,111.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0,111.1	감) 24,444.7	5,666.4	18.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4,444.7	24,444.7	8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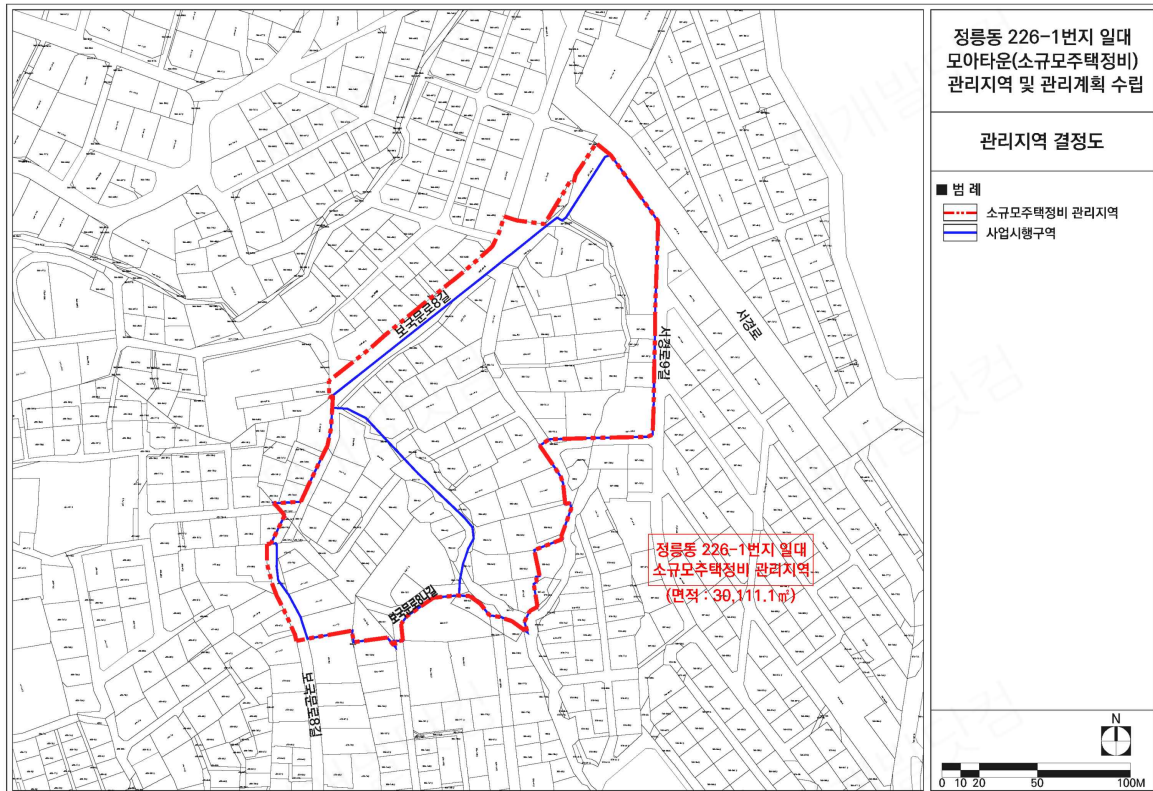
차.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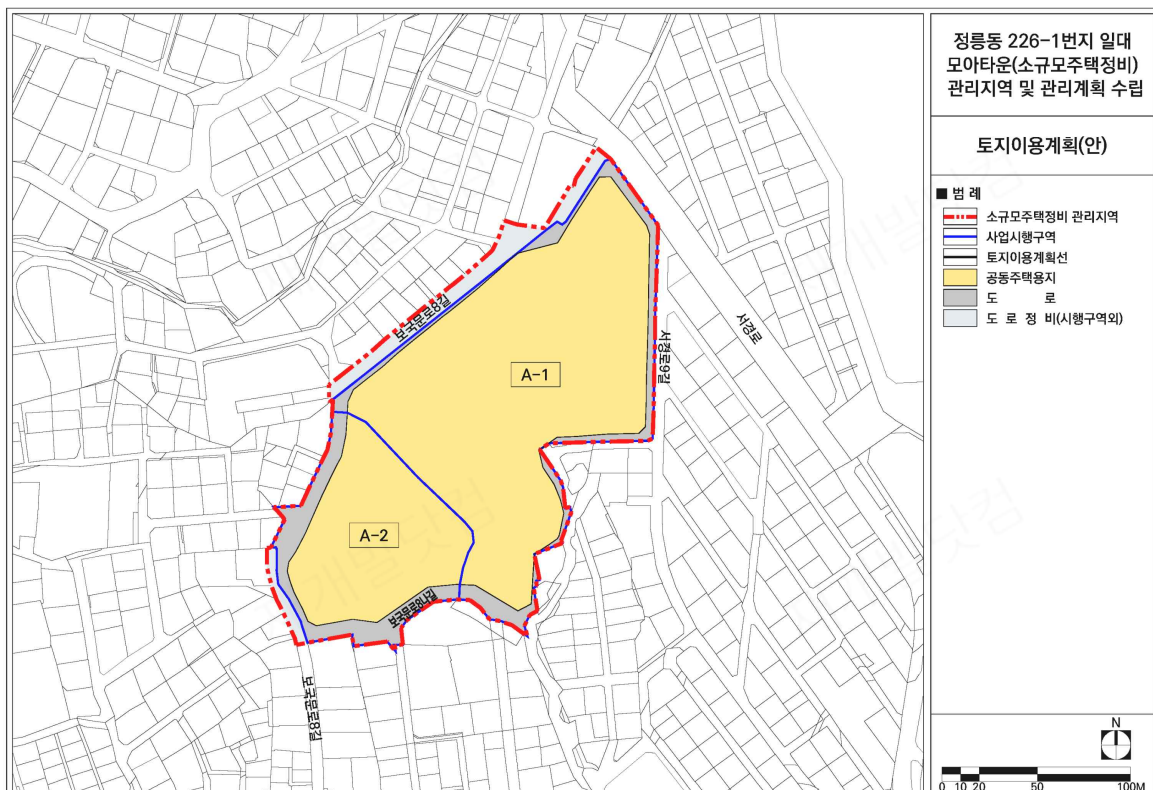
도면표시	구역명	면적(㎡)	계획 내용	계획 사유	비고
특별건축구역	A1	17,985.6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모아주택 A1, A2구역의 통합적 계획유도 •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 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A2	6,459.1			-

[붙임 :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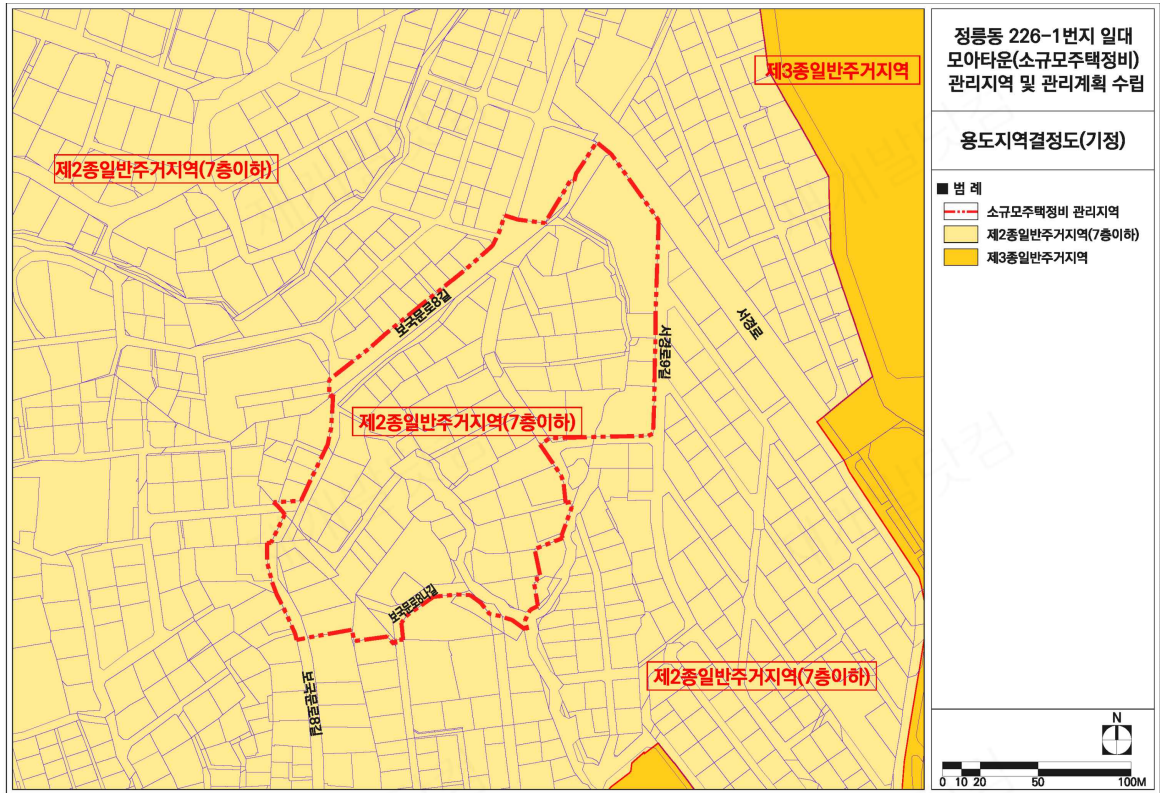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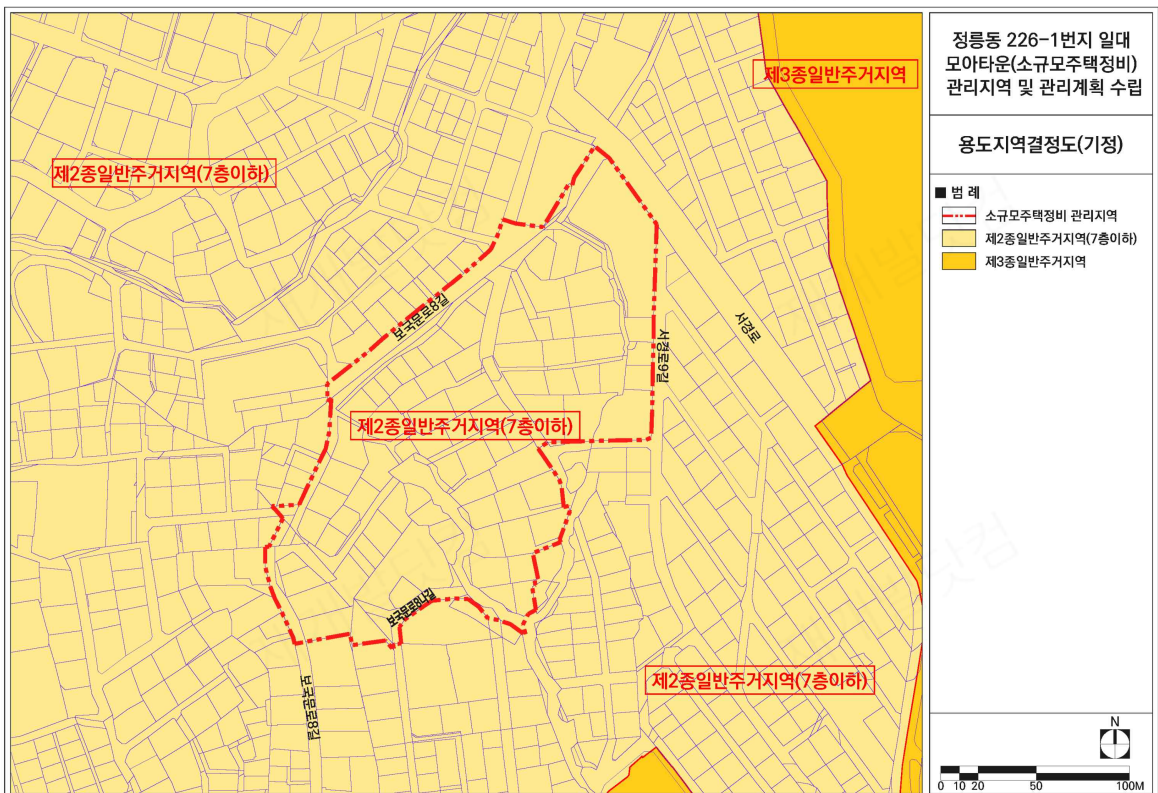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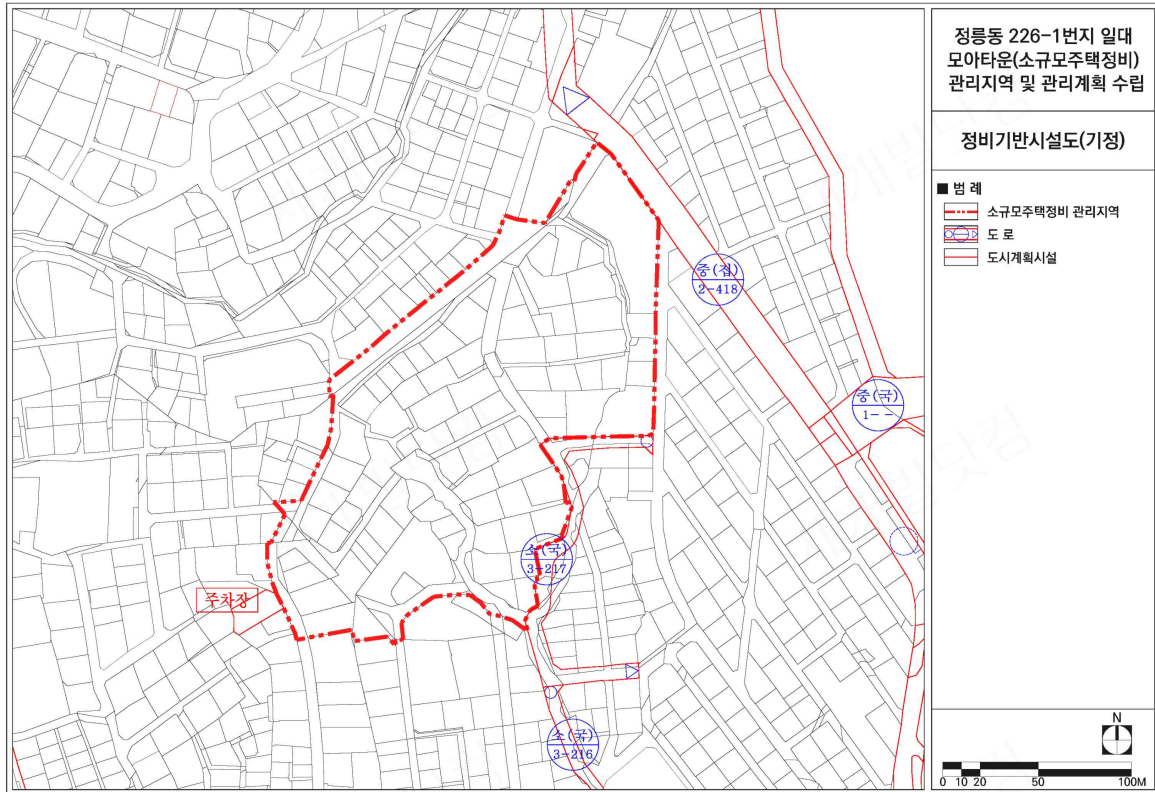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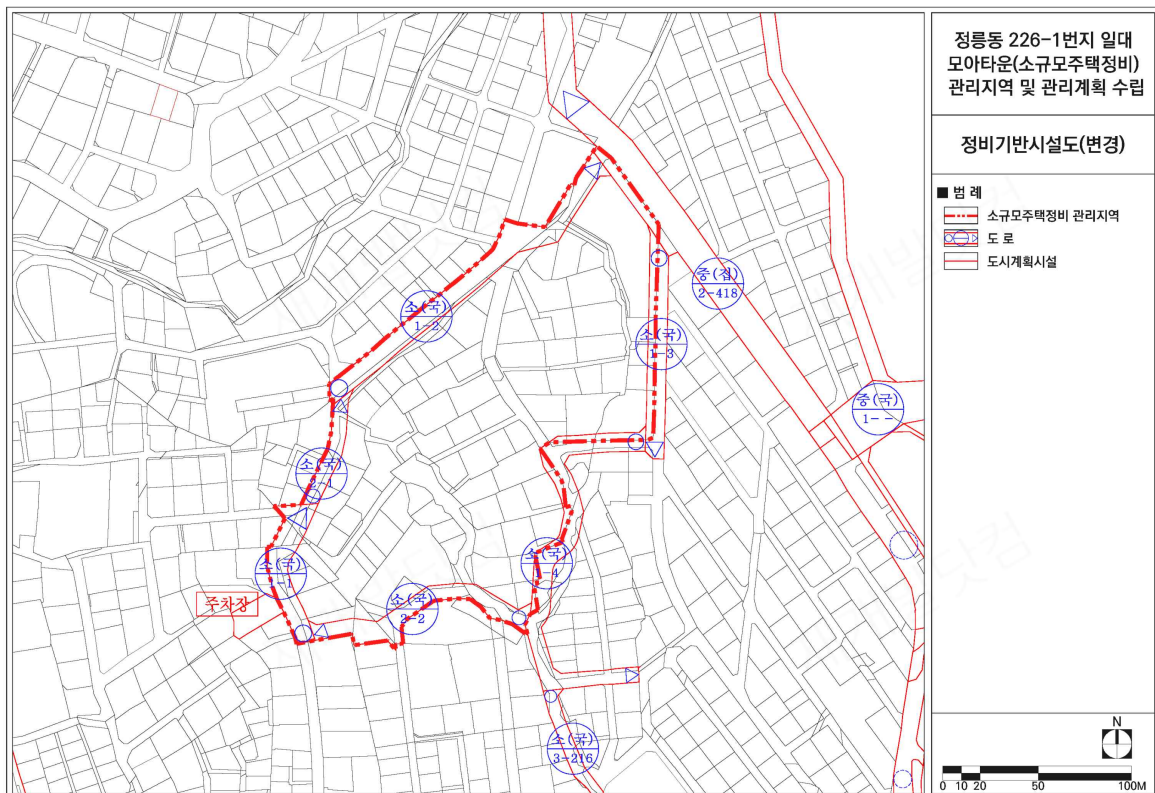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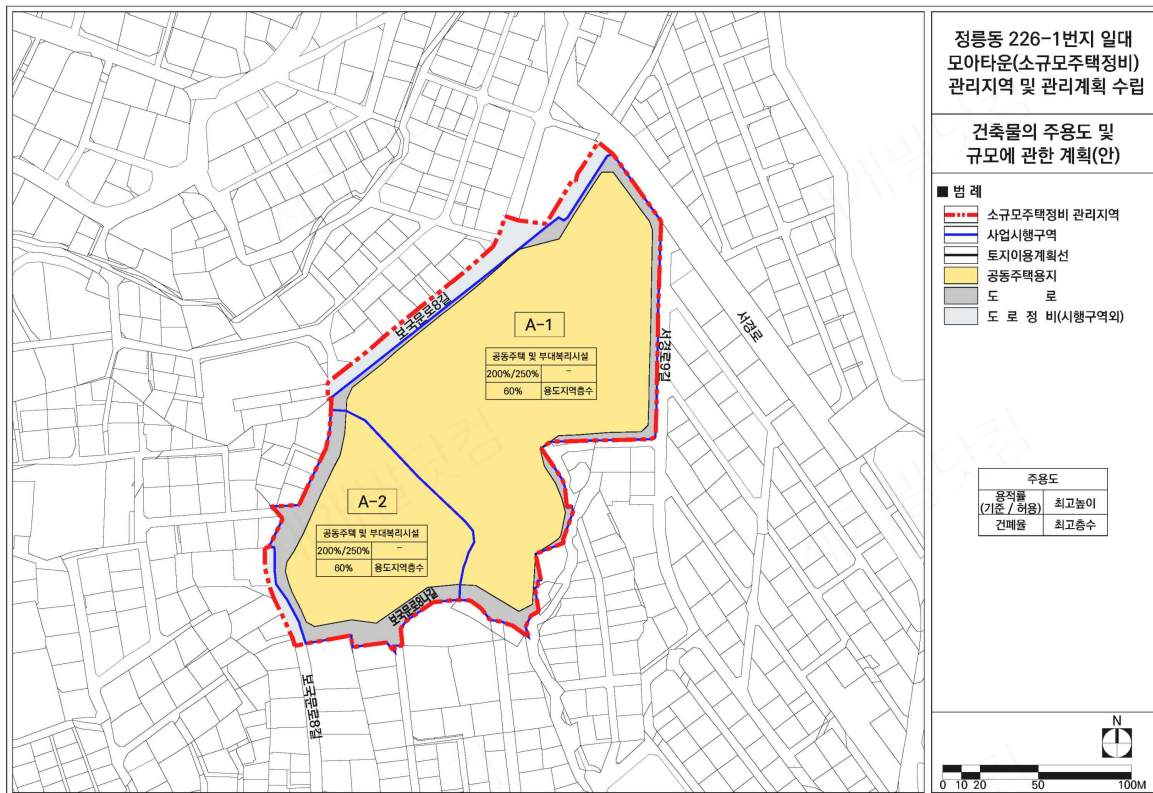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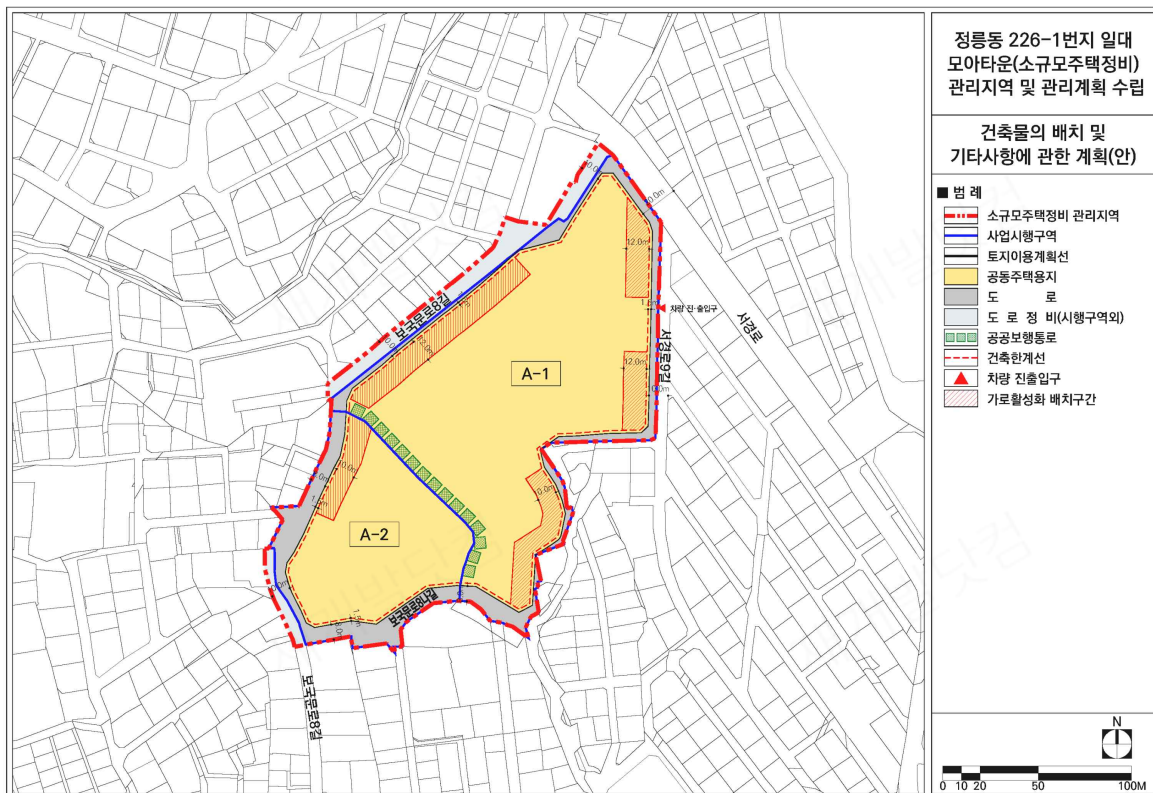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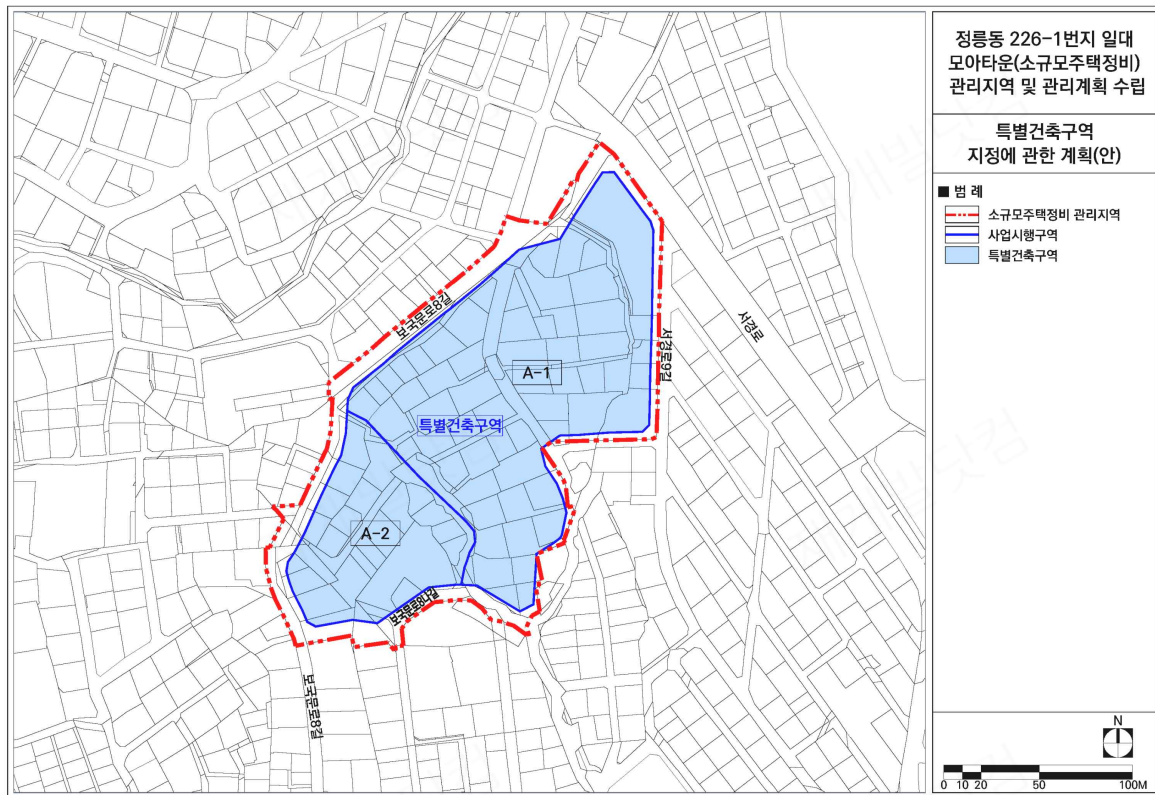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인

2025년 11월 6일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안 제6조)

다.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

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규정 제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책자회의록

가. 보존회의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

나. 비공개회의록: 의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

2. 전자회의록

가. 전자임시회의록: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회의록

나. 전자회의록: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는 회의록

제3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의회 본회의 회의록 작성은 회의규칙 제41조를,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또는 발언한 의원(이하 “발언의원”이라 한다)이 회의록 내용을 불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한 의원과 협의하여 전자임시회의록과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보존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열람 등) ①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하여 영구보존한다.

②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보존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5조(비공개회의록의 보존·열람) ①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서 보관한다.

②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6조(전자회의록 공표) ① 전자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가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자임시회의록에 게재한 후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게재된 회의록을 삭제할 수 있다.

③ 전자회의록은 전자임시회의록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각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전자회의록이 게시되었을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일반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의장 또는 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이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은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단명료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참고문서 또는 발언보충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은 회의 또는 발언과 관계있는 간단한 사항이어야 한다.

②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제14호 및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타 사항의 게재 요구가 있어 이를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에 게재한다.

제9조(자구의 정정) ① 발언의원·공무원 및 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른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구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③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록과 보존회의록을 정정하여 게재한다.

제10조(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① 의원 또는 발언자가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 및 성북구청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과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는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원고에 한하며 의장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이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비공개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녹음) ① 회의록 작성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② 속기 원고와 녹음파일 등은 전자회의록이 공표된 후 폐기한다.

제12조(자료제출) 본회의(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시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의장이 허가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자료 및 제3조제3항의 자료 등 서면자료는 의회 안전담당자에게 제출하되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의록 중 불게재 신청서
(제3조제4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회의록 내용 중 별도 표시 부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임과 같이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보존회의록 중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회의 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비공개회의록 열람 신청서
(제5조제2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고문서 게재 신청서
(제8조제1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회의록에 아래와 같이 참고문서를 게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 게재 요구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5호 서식]

자구 정정 요구서
(제9조제1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회의록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자구 정정을 요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회의록원고 열람·복사 신청서

(제10조제1항 관련)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

제 회 성북구의회 본회의(위원회) 호
회의록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열람·복사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사사항

용 도	
매수 · 분량	
신 청 내 용	

20 년 월 일

신청인

①

인사발령

《발령 제319호》 휴직(연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나승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질병)을 명함(연장)(2025.11.01.~2025.12.31.)	청소행정과	지방운전서기보

(시행일자 : 2025. 11. 1.字)

《발령 제320호》 휴·복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권혜은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질병)을 명함(2025.10.30.~ 2026.04.29.)	여성가족과	지방사회복지서기

(발령일자: 2025. 10. 30.字)

《발령 제321호》 지원근무 해제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이호현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2	강소정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이동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3	진미선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도시안전과	지방행정주사보
4	윤경복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건설관리과	지방운전주사보
5	김유빈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재무과	지방행정서기
6	박준언	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 지원근무를 해제함	주거정비과	지방시설시기보 시보 (건축)

(발령일자: 2025. 11. 01.字)

《발령 제322호》 복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공아민	복직을명함 종압동근무를명함	성북동	지방행정서기보

(발령일자: 2025. 11. 03.字)

《발령 제323호》 기간연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명숙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연장함 (연장기간 : 2025. 11. 1. ~ 2027. 10. 31.)	건강정책과	임기제 지방보건진료 주사
2	나혜경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연장함 (연장기간 : 2025. 11. 1. ~ 2027. 10. 31.) ※ 주35시간 근무	의약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발령일자: 2025. 11. 1.字)

《발령 제324호》 의원면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소영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아동청소년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발령일자: 2025. 11. 1.字)

《발령 제325호》 당연퇴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왕병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일자로 당연퇴직 (근무기간 : 2020. 11. 2. ~ 2025. 11. 1.)	교통지도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발령일자: 2025. 11. 2.字)

《발령 제327호》 근속승진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나종원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보문동	지방행정주사보

(발령일자: 2025. 11. 1.字)

《발령 제328호》 대우공무원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이인숙	6급(지방세무주사) 대우로 선발함	세무1과	지방세무주사보

(발령일자: 2025. 10. 1.자)

《발령 제329호》 대우공무원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최숙향	5급(지방행정사무관) 대우로 선발함	행정문화국	지방행정주사
2	최다인	6급(지방행정주사) 대우로 선발함	월곡제2동	지방행정주사보
3	최두호	6급(지방시설주사(건축)) 대우로 선발함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건축)
4	김소현	7급(지방공업주사보(기계)) 대우로 선발함	환경과	지방공업서기(기계)

(발령일자: 2025. 11. 1.자)

《발령 제330호》 휴·복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박정원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25.11.01. ~ 2026.05.31.) (임신확인서 제출)	건강관리과	지방간호서기

(시행일자: 2025. 11. 1.字)

《발령 제331호》 휴직, 보직(신규)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이노영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질병)을 명함 (2025.11.03. ~ 2026.06.30.)	도시안전과	지방행정주사
2	진성만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근무를 명함 중대재해예방 담당주사에 포함	장위제2동	지방행정주사

(발령일자: 2025. 11. 03.字)

《발령 제332호》 휴직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소속	직급
1	이선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25.11.07. ~ 2026.12.31.) (* * * * * * * * * * - * * * * * * *)	월곡제1동	지방행정서기

(발령일자: 2025. 11. 07.字)

